

社團法人 韓國水道協會 定款

制定施行(1974. 2. 1)
改 正(1978. 11. 29)
改 正(1980. 1. 9)
改 正(1980. 11. 27)
改 正(1986. 7. 8)
改 正(1991. 5. 15)
改 正(1993. 1. 12)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協會는 社團法人 韓國水道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라 부른다.

第2條(目的) 協會는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및 中水道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政府의 上下水道政策에 協助하여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位置) 協會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며 必要한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2章 事 業

第4條(範圍) 協會는 第2條의 目的達城을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中水道施策 및 運營에 대한 建議, 諮問의 應答
-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中水道關係 資料의 調查, 統計 作成 및 學術의 研究
-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및 中水道技術의 發展을 위한 研究
-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中水道關係標準示方書 및 上下水道 機資材의 規格에 關한 研究
- 協會誌 및 기타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中水道關係 圖書의 出版
-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中水道關係 行事開催 및 弘報活動과 教育研修
- 上下水道, 工業用水道, 中水道關係 國際交流
- 會員의 福利增進과 權利雍護
- 其他 本會 目的達城을 위한 事業

第3章 會 員

第5條(會員資格) ① 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로서 構成한다.

- (團體會員)上下水道事業者
- (企業體會員)上下水道關係 企業體
- (個人會員)上下水道關係 從事者, 上下水道에 關한 學識 經驗이 있는 者
- (名譽會員)理事會에서 推戴하는 者

第6條(權利) ① 正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協會의 모든 權益을 均霑

하고 協會 運營에 直接 參與한다.

- ② 名譽會長은 協會運營에 關한 意見을 提出할 수 있으며 總會나 理事會에서 發言할 수 있다.

第7條(義務) ① 正會員은 定款과 諸規定 및 總會와 理事會의 決議事項을 遵守하며 會費를 納付한다.

- ② 名譽會員은 協會의 諮問에 應하며 協會運營에 協調한다.

第8條(褒賞) 上下水道 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거나 協會運營에 有功한 會員에게는 理事會의 決議로 이를 褒賞한다.

第9條(懲戒) 會員으로서 上下水道 發展에 沮害되는 行爲를 하였거나 協會의 威信이나 名譽를 毀損케한 事實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 決議로서 懲戒한다.

第4章 任 員

第10條(任員) ① 協會는 會長 1人, 副會長 2人을 包含한 11人 以內의 理事와 2人 以內의 監事を 둔다.

- ② 副會長 2人中 1人은 常任으로 한다.

第11條(選出) 任員은 正會員中에서 會長이 추천하여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2條(任期) ① 會長 副會長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②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第13條(職務) ① 會長은 協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다만, 會長 有故時는 先任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 ② 常任副會長은 2人의 副會長中 理事會에서 1人을 選出한다.

-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 ④ 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協會會務와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 ⑤ 監事는 協會의 財產과 業務 및 經理執行事項을 監查하며 總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⑥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實費와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4條(顧問) 協會에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理事會에서 推戴한다.

第15條(運營委員 등) ① 運營委員會의 委員은 任員과 任員을 歷任한 者 中에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

- ② 其他委員會의 委員은 會員中에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

第5章 總 會

第16條(構成) ① 總會는 協會의 最高決議機關이며 正會員으로 構成한다.

② 總會構成員은 그 議決權을 總會에 參席하는 다른 構成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하여 開會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7條(區分) ① 總會는 定期 및 臨時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②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할 때 또는 構成員 3分之 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 會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前項의 要求가 있을 때 이를 30日以內에 召集하여야 한다.

第18條(附議案件) 總會에 附議하는 案件은 다음과 같다.

1. 定款의 變更
2. 事業報告와 決算의 承認
3. 事業計劃 및 豐算의 承認
4. 任員 選出
5. 會費의 額數決定
6. 其他 理事會에서 附議하는 案件

第19條(委任) 總會는 總會의 決議로서 附議案件의 一部를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6章 理 事 會

第20條(構成) 理事會는 會務決議機關이며 會長 副會長과 理事로 構成한다.

第21條(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나 在籍理事 過半數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22條(附議案件) 理事會에 附議하는 案件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處理
2. 總會에 附議할 議案의 豐備審查
3. 任員推薦 顧問의 推戴, 運營委員등 推薦
4.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5. 會員의 資格審查, 褒賞, 懲戒
6. 對外 建議, 陳情 및 諮問의 處理
7. 科目間 轉用 承認, 豫備費支出의 承認, 會費額數事前審議
8. 其他 會務의 處理

第23條(運營委員會等) ① 理事會는 理事會決議로서 會務의 分野別處理를 위하여 運營委員會와 分科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會에는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② 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第24條(顧問會) ① 理事會는 理事會 決議로서 顧問會를 둘 수 있다.
② 顧問會議는 必要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第7章 業務機構

第25條(事務局等) ① 協會의 事務를 分掌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과 職員을 두되 그에 必要한 規定은 따로 定한다.
②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免하며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③ 協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을 推進하는 事業部를 둘 수 있다.
④ 事業部에는 部長과 職員을 두고 部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免하고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第8章 財政

第26條(會計年度) 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27條(資產構成) 協會의 資產은 基本資產과 普通資產으로 區分한다. 다만, 그 區分은 財務 會計規程으로 定한다.

第28條(經費) 協會의 經費는 다음 歲入으로 充當한다.

1. 會 費
2. 特別會費
3. 補 助 金
4. 贊 助 金
5. 事業收入
6. 其他收入

第29條(會費) 會費는 個人會費와 團體會費 및 企業體會費로 區分하며 年1回 納付 한다. 다만, 그 額數는 總會에서 定한다.

第30條(特別會計) 協會는 事業의 効率的인 運營과 獨立採算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은 特別會計로 할 수 있다.

第31條(監事) 監事는 協會의 會計에 關한 事項을 年2回以上 監查한다.

第32條(豫算의 追加更正) 總會에서 承認받은 豫算에 대하여 理事會의 決議로 追加 또는 更正을 할 수 있다. 다만, 總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9章 補 則

第33條(定款改正) 定款의 改正是 理事會의 決議나 在籍 會員 3分之1 以上의 連署 하여 總會에 提出되며 總會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員 3分之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34條(規程) 本 定款 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第35條(定足數) 總會는 構成員 2分之1 以上 出席에 出席會員 過半數贊成으로 議決 하며 기타 會議는 在籍 2分之1 以上 出席에 出席會員 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36條(議事錄) 協會의 모든 會議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그 議事錄에는 日時와 場所, 會議 經過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理事의 記名捺印을 받아 保管한다.

第37條(議事錄의 報告) 總會 및 理事會의 開催 結果는 議事錄을 添付여 2週日 以內에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8條(事業計劃 및 豫算등의 提出) 總會에서 決議한 事業計劃 實績 및 豫算決算書는 그때마다 建設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本 定款은 社團法人의 認可를 얻음으로써 그 效力이 發生한다.

第2條(經過措置) 發起人은 協會의 設立과 同時에 當然히 會員이 되며, 設立發起完了日까지 總會의 權限은 發起人會에서 選出된 理事로서 構成된 理事會가 각各이를 代行하며 追認받지 아니한다.

附 則(1993. 1. 12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1993. 1. 12부터 效力を 發生한다.